

부산지방법원 2021. 2. 4 선고 2020가단133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10 선고 2021나45091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1. 2. 4 선고 2020가단1338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

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

담당변호사 정필승

변론 종결 2021. 1. 14

판결 선고 2021. 2. 4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6. 10.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428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2015. 12. 3. 부산지방법원 접수제954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각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주장

원고는 피고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보증을 하는등 어떠한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고,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설정하여 준 일이 전혀 없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한다.

나. 판단

살피건대,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, 오히려 을 제1,2호증의 각 1,2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피고는 원고에게,① 2015. 6. 9.30,000,000원을 변제기 2015. 9. 9. 이자 연 25%(월 625,000원)로 정하여, ② 2015. 12.3. 20,000,000원을 변제기 2016. 3. 3. 이자 연 25%(월 416,000원)로 정하여,각 대여한사실,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부동산에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금덕 희

별지